#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<u>관련</u> 번 호 1745

제안년월일: 2017년 4월 20일 제 안 자: 보건복지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시책 마련의 조례상 근거인 안 제3조제1항제 4호는 "종이관 등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에 대한 권장 및 홍보활동"을 명시하고 있으나, 친환경 장례용품 검증 및 유통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재질의 장례용품을 친환경으로 예시할 필요성이나 당 위성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"종이관 등"을 삭제하고,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권장을 위한 안 제7조제4항과 제7항의 시립장사시설 이용료 감 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례식장, 상조회사, 유족과의 공감대 형성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 제7조제4항 단서를 삭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권장을 시립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단서조항을 삭제함.(안 제7조제4항 단서)

### 3. **참고사항** : 없음.

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인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제4호 중 "종이관 등"을 삭제한다.

안 제7조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"제4항과"를 삭제하며, 같은 조 같은 항중 "감면 및"을 삭제한다.

# 수정안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정안
제3조 (장사문화 개선 등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화장 및 봉안·자연장의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한다. ② ~ ③ (생략)	제3조 (시장의 책무) ① 시 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 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· 시행하여야 한다. 1. 관할구역 장사시설의 안 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 제고 2. 무분별한 사설묘지 증가 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를 위하여 화장·봉안 및 자연장 문화 장려 3.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·홍보활동 4. <u>종이관 등 친환경</u> 장례 용품 사용 권장·홍보활 동 5.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 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 에 대한 방재대책	제3조 (시장의 책무) ① 시 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 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· 시행하여야 한다. 1. 관할구역 장사시설의 안 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 제고 2. 무분별한 사설묘지 증가 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를 위하여 화장·봉안 및 자연장 문화 장려 3.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·홍보활동 4. <u>친환경</u> 장례용품 사용 권장·홍보활동 5.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 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 에 대한 방재대책
제7조(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) ① ~ ③ (생략) ④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및 관리비는 별표와 같다. 〈단서 신설〉 ⑤ ~ ⑥ (생략) ⑦ 제6항에 따른 사용료및 관리비 환불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7조(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	제7조(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및 관리비는 별표와 같다. <u>〈단서 삭제〉</u> ⑤ ~ ⑥ (생략) ⑦ <u>제6항</u> 에 따른 사용료및 관리비 <u>환불</u>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· 시행하여야 한다.
  - 1. 관할구역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 제고
  - 2. 무분별한 사설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하여 화장·봉안 및 자연장 문화 장려
  - 3.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·홍보활동
  - 4.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권장·홍보활동
  - 5.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혀 행 개 정 안 제3조 (장사문화 개선 등) ① 서울 제3조 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바 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·시행하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봉안·자 여야 하다. 연장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 1. 관할구역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 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급 및 시설수준 제고 2. 무분별한 사설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하여 화장・ 봉안 및 자연장 문화 장려 3.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·홍보활동 4.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권장·홍 보활동 5.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② ~ ③ (생략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